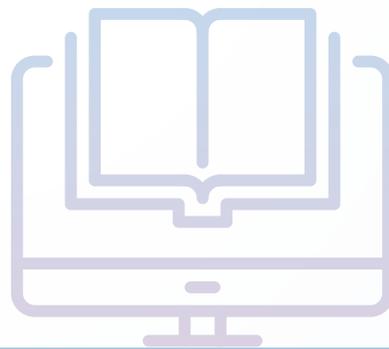


저작물 관리 지침

① 올바른 저작물 발간을 위한
폰트 이용가이드

2021. 9. 27.



본 지침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저작물의 인터넷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폰트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학회 저작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인터넷 공개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5 가지”



외주업체 제작 시 저작물 공개에 문제가 없는지
폰트 라이선스를 꼭 확인해요.



폰트 라이선스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저작물을
전부 이미지화 하여 게재할 수 있어요.



가급적 한글이나 MS-Office 등 정품 SW에 포함된
번들 폰트를 이용해요.
폰트마다 이용권한이 다른데, 함초롬체, 문체부체가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글자체예요.



한글, MS-Office 등에서 PDF 파일 변환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폰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신이 없다면
인터넷에 공개하면 안 돼요.

저작물 관리 지침



1. 목적

- 학회 발간 저작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
-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대응

2. 관련 법령

- 「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 ※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3. 주요 용어

- **폰트** : 글자 모양을 뜻하며 서체, 글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 **폰트파일** : 폰트를 표시·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
- **번들폰트 파일** : 한컴·MS-Office·윈도우 등에 포함되어 설치된 폰트파일
- **인스펙터**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 등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 제2조제1호)

4. 저작물 공개를 위한 분류기준 수립

- 저작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개 혹은 비공개로 구분하여 관리
- 공개가 가능한 저작물의 일관성 있는 공개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저작물 공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

[참고] 공개분류 기준항목(예시)

영역	항목	이행여부
저작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작권	서면으로 저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정부과제	정부 용역과제인 경우 발주부처의 공개 승인을 받았는가?	

- **(예외사항)** 자료공개가 곤란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학회 내부 자료로써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회의록 등)
- ▶ 판매 수입이 발생하는 저작물인 경우
- ▶ 시험문제 개방에 따른 문제은행방식의 운영이 곤란해지는 경우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 국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

- 효율적인 저작물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운영
- 기존 저작물 관리 방침이 없는 경우, 각 학회별 상황에 맞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

[참고] 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예시)

구 별	확인사항	확인	해당없음		
발간 전 단계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외주업체 제작 시 공개가 가능하도록 폰트 라이선스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기재하였는가? 예시) 저작권 표시는 주로 책의 맨 끝 장에 발행 날짜, 저작자·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제작업체 정보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저작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 발간하는가? 예시) 앞표지 좌측 상단 기재, 예외적으로 내지도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발간등록번호</td> </tr> <tr> <td>kams-2021-000</td> </tr> </table>	발간등록번호	kams-2021-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발간등록번호				
	kams-2021-000				
	서면으로 저자의 사전 저작물 활용 동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상 자료 및 저작물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목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취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부 용역과제인 경우 발주부처, 민간 용역과제인 경우 지원기관의 공개 승인을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발간 후 단계	공개분류 기준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또는 일부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비공개 사유를 함께 기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쇄된 책자는 학회에 00부씩 보관하였는가? 예시) 보관용2부, 국립중앙도서관3부 발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저작물 관리에서 폰트 파일의 중요성

- 저작권법에서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음
- 저작물을 만들 때 폰트파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법 폰트파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함
- 불법 폰트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직원의 법적 책임과 별도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음

7. 폰트 파일 저작권법 이해

- 원칙적으로 폰트 파일을 별도로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그러나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폰트 파일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한컴·MS-Office·윈도우 등 정품 SW 구입 시 포함되어 설치된 번들 폰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번들 폰트는 정품 SW를 구매하면서 이용을 허락받은 폰트라고 할 수 있음 (단, 번들 폰트에 따라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음. 아직 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분쟁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시 주의 필요)
- 무료폰트라도 이용 권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유료폰트를 별도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포스터나 유튜브 영상 등의 형태로 배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8. 폰트 저작권 관련 FAQ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내용 중 폰트파일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다운 가능

폰트 저작권 관련 FAQ



1. 외부 업체에 맡겨 제작된 경우 학회에 책임이 발생하는가?

외부 제작업체에게 맡겨서 제작된 것이라면 외부 제작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아래아 한글에 번들되어 있는 폰트 파일로 PDF 파일을 생성하면 불법일까?

한글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면서 글꼴을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아 한글 번들폰트의 약관에서 글꼴 파일을 문서 내에 포함하는 경우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면,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아직 법원 판결이 없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자료집을 전부 이미지화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글꼴 저작권 문제가 발생 하는가?

자료집을 이미지화한 뒤 업로드 하는 방법은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글자체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출력된 결과물을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단, 단순 출력물만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예: 서예 등 미술저작물)

4.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폰트 파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자신이 설치한 서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서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 직원이 불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하나?

저작권법에서는 직원이 불법적으로 폰트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직원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폰트 파일이 설치 이용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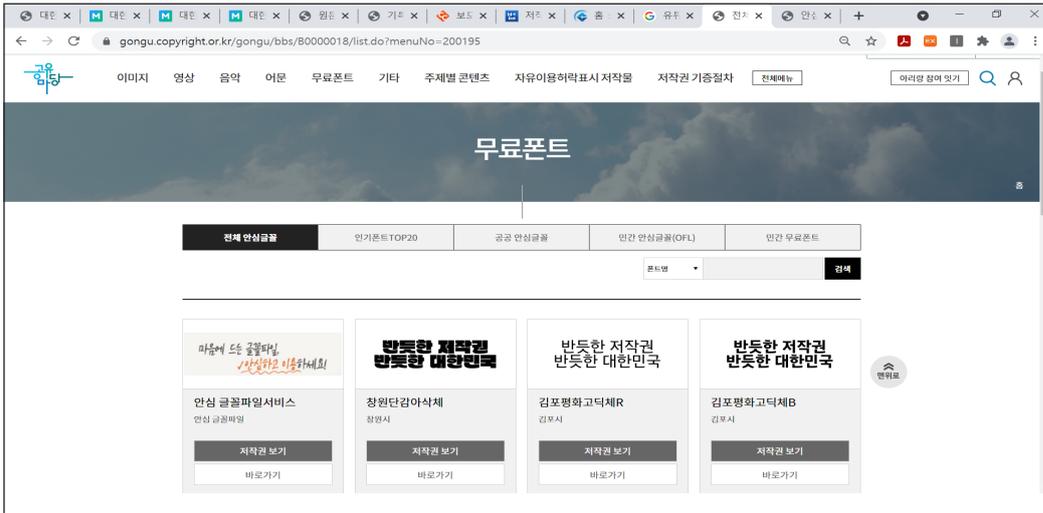
6.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연락이 올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로 무료상담하길 권장합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조정 제도(문의 : 02-2669-0042, 0044)를 이용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9. 폰트 이용가이드

무료 폰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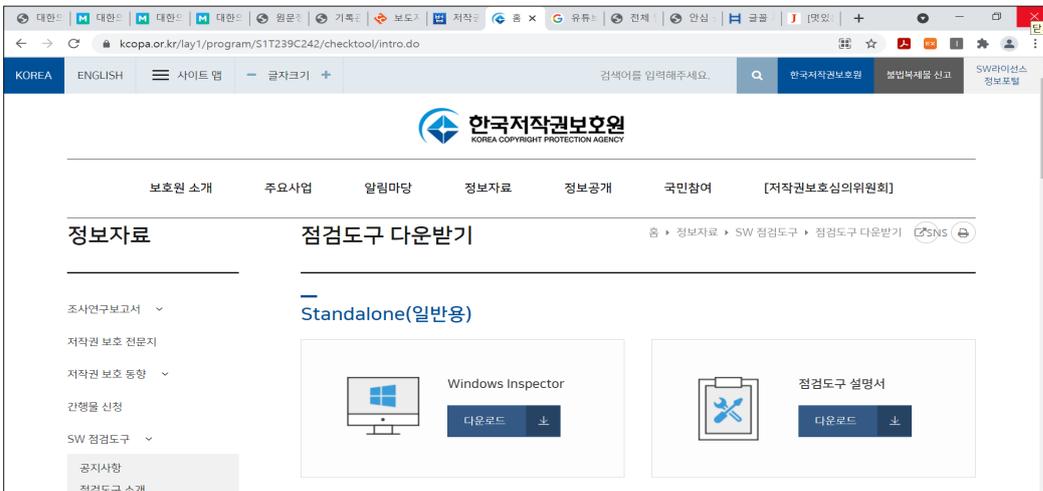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무료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단, 폰트마다 이용 규약과 저작권이 다르므로 규정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야 함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음. 단, 그 이용조건을 잘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폰트 파일 점검 및 관리

- 내 컴퓨터에 어떤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 *인스펙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 등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상태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임
- 인스펙터로 폰트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점검 결과가 수집되지 않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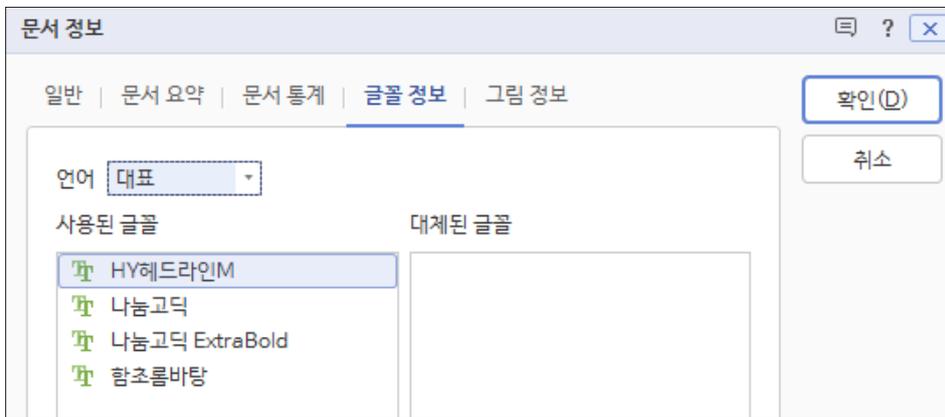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PC에 설치된 모든 폰트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폰트에 대한 삭제 대상 여부는 안내하기 어려움.

폰트 파일 삭제 방법

- 검사 결과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이 발견되면 삭제해야 함
- 윈도우 경우 : [시작] → [제어판] → [글꼴]에서 설치된 글꼴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삭제

파일에 사용된 폰트 확인 방법

- 아래아 한글(HWP) : [파일] - [문서정보] - [글꼴정보]에서 확인



참고문헌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2019.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TV, 폰트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나요?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TV, [저작권 교육영상] 교육목적의 폰트, 허락이 꼭 필요해!
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TV, [저작권 교육영상] 번들폰트,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저작물 관리 지침 - 1. 올바른 저작물 발간을 위한 폰트 이용가이드

발행인 정지태

편집인 김재규

인쇄 미래기획

발간등록번호 kams-2021-006

발행처 대한의학회

발행일 2021년 9월 27일

대한의학회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 DK빌딩 5층

TEL 02-798-3807 FAX 0502-798-3807 홈페이지 www.kams.or.kr

저작물 관리 지침

❶ 올바른 저작물 발간을 위한
폰트 이용가이드



대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